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96
----------	-------

발의연월일 : 2026. 5. 4.

발 의 자 : 천하람·이준석·김재섭
조은희·김용태·이주영
양부남·이소영·정성국
용혜인·유용원·김소희
김준환·차규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등).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리는 이 법에 따른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